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함(안 제22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최 기 도)